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3.04.24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하 'LiFE사업'이라 한다)의 평가 및 운영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사업성과 및 실적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 ②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평가
- ③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달성 여부 및 중장기발전계획 연계성 추진 실적 평가
- ④ 사업비 운영 및 집행, 관리의 적정성 평가
- ⑤ 세부 사업별 결과분석, 종합평가 및 환류평가, 컨설팅
- ⑥ 그 밖의 사업평가와 관련된 주요사항

제3조 (구성)

- ① LiFE사업 평가 및 운영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LiFE사업 종료 시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임기는 조정될 수 있다.
- 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 ① 정기 : 위원회는 년 2회(학기별 1회)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수시 :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LiFE 사업단의 안건 상정 시 소집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7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2023.04.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한다.